(조매체) 2013년 5월 26일(일) 14: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창업진흥과 김성섭과장 (042-481-4407), 이형철사무관(481-4429)
• 문의 :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규홍과장 (02-500-9064), 장희정사무관(500- 9063)

외국인도 손쉬운 창업의 길 열려....

– 창업비자 도입, 외국인 기술창업·성장 프로그램 운영 –

주요내용

◆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「창업비자제도」를 도입하고 창업비자 소지자도 영주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
* 발급대상 : 국내대학 학사이상 학위, 지적재산권 활용 법인 창업한 외국인

◆ 「외국인 기술창업·성장 프로그램」 운영 : 창업사업화 + 창업비자
* 사업화 자금(5천만원 한도), 공간 제공(창업보육센터 등), 멘토링 등

◆ 「코리아 벤처창업센터」,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국내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□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**우수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을 대상으로 '창업비자' 제도가 도입되**고, **별도의 「기술창업·성장 프로그램」을 통해 이들이 창조경제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**에 나선다.

* 법무부(장관 황교안)와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5.24(금) 외국인정책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를 개최하고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」을 보고

** "벤처창업자금 생태계 대책(5.15 발표)"의 후속조치로 "창조경제형 이민정책"의 일환

□ 이번에 **신설되는 한국형 "창업비자"**는,

○ 우수한 외국인력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·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련 중인 '스타트-업 비자'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,

< 해외 사례 : 창업비자 및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정책 >

◆ **(미국) "스타트업 3.0 비자 법안"** 발의(금년 6월중 의회 통과 예정)
◆ **(캐나다)** 캐나다에서 창업**하는 해외인재에게 영주권 부여**('13.4~)
◆ **(칠레)** 스타트업 기업이 칠레에서 창업하는 경우 **4만달러 초기자본과 입주공간 및 1년 체류비자 발급**('11~)

○ 단순히 체류자격만 부여하는 선진국의 창업비자와는 달리,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**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**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,

○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**44.8%가 한국내 창업을 희망**하고 있고, **창업희망자의 67%가 이·공계 전공자**로서 전기·전자, 정보·통신 등 **"기술분야 창업을 희망"하고 있는 것**으로 조사*되고 있어,

* 국내 외국인 유학생(300여명) 대상 창업수요조사(창업진흥원, '11)

○ 금번 창업비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"**최근 한국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외국인(유학생)의 기술창업이 보다 확대되어 고용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**"은 물론 "**부가가치 창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**"된다고 밝혔다.

< 첨 부 >

일자리 창출을 위한

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

– Global Start-up Hub KOREA –

2013. 5. 24.

중소기업청·법무부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외국인 유학생 창업수요 현황 ····· 2

Ⅲ.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 ····· 3

1. 창업비자제도 신설 및 운영 ····· 3

2. 외국인 창업자 국내유치 및 기술창업 ··· 4

3. 정책 홍보 ····· 6

Ⅳ.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····· 7

< 참고 > 1. 외국 창업비자 제도 ····· 8

2. 글로벌 창업수요조사 결과 ····· 10

Ⅰ. 추진배경

□ 창조경제는 **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**하여 새로운 산업·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

○ 특히, **기술창업과 지속적 성장이 핵심**이나,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가정신 쇠퇴 등으로 인해 **청년 등의 기술창업이 감소 추세**

* 대학생 창·취업 선호도(현대경제연구원) : 창업(14.5%), 취업(85.5%)
** 20~30대 벤처기업 CEO 비중 : ('01) 3,373개, 56.2% → ('12) 5,483개, 19.4%

○ 반면, **'외국인'의 국내 기술창업(제조업, 전문서비스업 등) 수는 증가**하여 **새로운 일자리 창출원(原)**으로 역할을 담당

< 외국법인 현황 ('06~'12) >

구분	합계	제조업	전문서비스업	금융보험업	도소매업	음식숙박업	운수창고업	부동산업	건설업
2006	1,485	49	718	89	475	3	67	40	20
2008	1,585	47	704	102	543	5	79	40	31
2010	1,573	57	711	93	502	5	97	45	30
2012	1,582	56	727	90	491	6	94	34	25

□ **주요 선진국**에서도 외국인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**창업비자제도 및 외국인 창업촉진 정책을 추진**

○ **(미국) "스타트업 3.0 비자 법안"** 발의

* 종류 : ①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 분야의 석·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5년 이상 활동한 외국학생이 창업, ② 10만 달러(1억1000만원)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외국인창업

** **카우프만 재단** : 미국 동 법안 통과시, 향후 10년간 1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

○ **(스위스) "기술 있다면 국적 상관없이 기술창업 촉진"**

- **과학기술**에 기반하고 스위스 영토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, **내국인과 동일하게 창업을 지원**(스위스 혁신진흥청 : R&D, 코칭 등 지원)

⇨ 외국의 우수인력이 그들의 기술·아이디어로 국내에서 창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창조경제 일원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

Ⅱ. 외국인 유학생 창업수요 현황

□ **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**

○ **유학생 수** ('13.4)는 **8.3만명 수준***이며, '08년 이후 증가 추세

* 유학(D-2) 6.4만명(재학생 5.4만명, 교환학생 0.9만명), 한국어연수(D-4-1) 1.9만명,

< 연도별 유학생 현황 >

연도	'06	'08	'10	'11	'12	'13.4월
합계	62,557	71,531	87,480	88,468	84,711	83,544
증감률 (전년대비, %)	-		8.0	1.1	-4.2	-

* 출처 : 출입국·외국인정책 통계연보

○ 대학교 재학 유학생(6.2만명) 중 **이공계 1.4만명**, 인문사회 4.2만명

< 전공별 유학생 현황('10, 명) >

국가	어학연수	대학교 재학생(전공분야별)						기타연수	합계
		인문사회	공학	자연과학	예체능	의학	계		
합계	17,584	42,569	9,611	4,832	4,481	1,107	62,599	7,298	87,480

* 출처 : 교육과학부, 교육기본통계('11년)

□ **창업수요조사 결과** (창업진흥원)

○ 조사대상 : 유학생 277명(서울대 71명, 고려대 66명, KAIST 70명 등)

○ 조사결과 : **국내 유학생의 44.8%가 창업의사**

- **(전공별) 공학계열**, 인문사회계열, 자연과학계열 순으로 창업의사

* 공학계열(47.6%), 인문사회계열(30.6%), 자연과학계열(12.9%)

- **(학력별)** 학사, 석사, 박사과정 순으로 창업의사

* 학사과정(68.0%), 석사과정(28.0%), 박사과정(4.0%)

- **(희망업종)** 대부분이(79.7%) **기술분야**에서 창업희망

* 정보·통신(19%), 생명·식품(17.7%), 전기·전자(15.8%), 기계·재료(8.2%) 등

- **(필요한 정책)** 창업자금, 멘토 및 컨설팅 순으로 정책수요를 표명

* 1순위(%) : 창업자금(49), 지원정보·공동창업할 한국동업자 연결(13.4) 등
2순위(%) : 창업멘토 및 컨설팅 지원(22), 공동창업할 한국동업자 연결(21.3) 등

Ⅲ.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

1 창업비자제도 신설 및 운영

□ **문제점 : 외국인 창업자가 창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**

○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자 또는 이를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, **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**

* D-8-나 비자 활용 외국인 벤처기업 등록현황(명) : ('09) 33 → ('10) 0 → ('13.2) 5

○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**4년 10개월**로, 외국인이 창업하여 **벤처기업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**

- 또한, 창업비자 후 **영주비자로 전환이 미국에 비해 제한**

* 영주비자 전환 :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명 이상 고용시 등

□ **개선방안**

○ **"창업비자제도" 신설**

- **D-8 비자명칭 변경추진** : 기업투자 → (가칭) **기업투자·창업**

- **D-8-나 항목의 대상범위 확대** : **(현행)** 벤처기업 확인자 → **(확대)** 벤처기업 확인자 + **기술창업 법인기업***

* 국내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소지,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자(법인)

○ 현행 **'영주비자' 발급 대상에 창업비자 소지자 포함**

- (요건 예시) 국내 투자자(VC, 엔젤 등)로부터 미화 10만달러 이상 유치하고, 2명 이상 국민을 고용(체류기간 3년)

* 캐나다 : VC($20만)나 엔젤로부터 투자를 유치(7만5천달러)한 경우 영주권 부여

2 외국인 창업자 국내 유치 및 기술창업 촉진

1 외국인 기술창업자 국내 유치

□ **문제점**

○ **국내 예비창업자의 해외 창업·진출**(실리콘밸리 등)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

* 중기청 : 글로벌 창업('13, 39개팀), 코리아 글로벌 앱 시장개척단('13, 44개팀) 등
미래부 : IT 지원센터('13, 3개소),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('13, 35개팀) 등

○ 그러나, 미국·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**해외의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족**

□ **추진방안**

○ 해외 우수인재 국내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의 교두보로서 **"코리아 벤처창업센터" 설립·운영**

- IT, 모바일 등 창조경제 핵심인재의 메카인 **실리콘밸리에 우선 설치**('13.하)하고, **유럽·아시아 국가로 점차 확대**

- 현지의 동포, 대학생 등과 연계하여 **현지 네트워크를 구축**하고, 외국 내 창업특화형 대학(밥슨 칼리지*, 스탠포드 등)과 연계강화

* 벤처경영, 성장관리, 벤처캐피탈 등 창업관련 주요 교과과정 운영 중

○ 외국인 창업자 대상 **'글로벌 창업경진대회 개최'**

- 미국(실리콘밸리), 중국(상하이), 베트남(하노이)에서 우선 개최

* 외국 대학·외국내 창업경진대회(미국 : 스타트업 위크엔드 등) 등과 연계성을 강화

- 우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지원

2 외국인 기술창업·성장 프로그램 운영

□ 문제점

○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(법인, 개인사업자)하더라도 **「중소기업 기본법」상 중소기업에 해당**
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: 법인설립등기일(법무부), 사업자등록일(국세청)

○ 따라서,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자·법인도 **창업융자·보증, 창업 R&D 신청이 가능**하나 **지원 실적이 미흡**

- 또한, **창업사업화 등 일부사업**(출연)**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용**

< 외국인 대표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('12) >

	정책자금				신보 (신규 공급)	기보 (신규 공급)	합 계
	창업	신성장	기타	소 계			
지원액(억원)	90.4	26.9	24.2	141.5	386	441	968.5
기업수(개)	22	7	17	46	77	77	200

□ 추진방안

< 외국인 기술창업 및 성장 프로그램 >

단계	창업 단계		⇒	성장 단계
프로그램	국내 기술창업	해외진출(Born Global)		
지원내용	① 창업사업화 : 자금+멘토링+공간 ②창업비자 발급	① 해외시장 조사 ②파트너국가 글로벌 창업경진대회	⇒	① 정책자금 융자, 보증 ② R&D 지원

① 외국인 전용 '기술창업 프로그램' 신설

- **(지원 대상)** ① 외국인* + 내국인 공동 법인창업
  ② 외국인 단독 법인창업

*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 이공계 계열 우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체류한 자

- **지원 내용**(국내법인 창업 후) **: 창업사업화 + 창업비자 발급**

▫ (자금) 시제품제작, 마케팅, 특허 출원 등 **창업사업화 비용의 70% 지원**(최대 5,000만원, '13년 10개팀 시범사업 추진)

▫ (멘토링·네트워킹) 선배 벤처기업 등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

* 선도 벤처기업과 연계하고,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선배·동료 등과 정보교류

▫ (공간)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(7개), 창업보육센터(277개)에서 입주 공간 제공

▫ (창업비자) 법인 신설 전·후 신청을 통해 창업비자 발급

- **우대 사항**

▫ 국내 학생과 **공동창업, 국내체류 해외동포 창업**은 가점 우대

▫ **내국인 고용창출 기업**에 대해 우대
(1~2년 이내 2명 이상 고용시 투자 등 연계지원)

② 해외 진출 지원 (Born Global)

- **(지원 대상)**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

* 외국인 유학생 현황('12) : 중국(57,783명), 일본(3,876명), 미국(2,193명) 등

- **(지원 내용)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·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**

3 창업비자 및 외국인 기술창업 정책 홍보

□ **창업선도대학, 대학생 창업아카데미** 등 창업교육과정 내 **외국인 학생 대상 창업교육 과정 운영**

* 대학생 창업아카데미, 창업선도대학 내 외국인 학생 창업교육캠프 운영 등

□ 법무부, 중기청(창업진흥원)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, 소식지 등을 통해 **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**
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기대효과

○ 우수 이공계 학생의 국내 기술창업을 통해 **국내 고용창출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**

○ 외국 기술·문화와 자국 기술·문화가 융합된 **창조경제 달성**

○ 외국인 기술창업자의 국적국가로 **글로벌 시장개척 촉진**

향후일정

실천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. 창업비자제도 신설·운영		
1 창업비자제도 신설	'13.하	법무부
2 영주비자 발급대상 확대	'14	법무부
2. 외국인 기술창업·성장 촉진		
1 코리아 벤처창업센터	'13.하	중기청
2 글로벌 창업경진대회	'13.하	중기청
3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	'13.하	중기청
4 해외진출 지원	'13.하	중기청
3. 정책 홍보		
1 외국인 학생 교육과정 운영	'14	중기청
2 홈페이지,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	'13~	중기청, 법무부

< 참고 1 >

주요국가 창업(스타트업) 비자 사례

국가명	미국	영국	싱가폴	아일랜드	뉴질랜드	칠레
최소 투자액($)	100,000	77,000	40,000	95,000	제한없음	없음
투자자	외국인	내국인	내/외국인	정부 선정	외국인	정부 무상지원
최초 비자(년)	1	3	1-2	2	0.75	1
시행연도	2013	2011	2008	2012	2009	2008

출처 : The Partnership for a New American Economy and The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, 2013

1 미국 : 스타트업 3.0

□ **(추진배경) "스타트업 3.0"** 법안의 창업비자는 **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도** 미국내 **외국인 창업**을 **허용**하는 제도로,

○ 높은 교육수준과 글로벌 감각을 소유한 **우수 외국인 창업가**의 유치를 통해 미국내 **일자리 창출**과 **경제발전**을 **모색**

* 추진현황 : 법사위(4월), 상원 표결(5~6월)을 거쳐 시행 예정

□ **법안내용**

○ **스타트업 3.0 비자**는 **두 종류**로 구분

ⓐ **미국 대학**에서 **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 분야**의 **석·박사학위**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**5년 이상** 활동한 외국학생에게 **최대 5만** 건의 비자 발급

ⓑ **10만 달러**(1억1000만원)의 **투자금을 유치**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**최대 75,000건**의 비자 발급

○ 일정 조건 충족*시, **스타트업 비자 3년간 연장 가능** (제210A조, e-B항)

* 스타트업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내에, ①회사 설립·등기 완료, ②최소 2명의 정규직 고용(친인척 제외), ③최소 10만달러(1억1000만원) 투자·자본금 확보를 의무

○ 위 조건을 유지하면서 **창업 후 2~4년차** (3년간) 사이에 최소 **5명의 정규직**을 고용(친인척 제외)하는 창업자에게 **영주권 부여**

2 캐나다 :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(Start-Up Visa Program)

□ **(추진배경)** 캐나다 **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**를 위해 도입

□ **제도 개요**

○ 캐나다 이민국이 캐나다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**해외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발급**

* '13.4.1일 이후, 5년 동안 파이럿 프로그램으로 시행 후 확장

○ **(지원내용)** 다양한 인센티브 및 영주권 제공, 사업 파트너 연결

○ **(요 건) 일정요건 이상**의 지원자로 **자질과 지원자 수 제한**

- 캐나다 벤처캐피탈(20만달러)이나 엔젤투자자(7만5천달러)로부터 투자 유치

-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, 중급 이상의 영어실력(혹은 불어)

○ **(비자 수)** 5년 동안 연간 2,750건씩

3 칠레 : 스타트업 칠레(Start-up Chile)

□ **(추진배경)** 외국의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

□ **제도 개요**

○ 전 세계 스타트업이 칠레에서 창업하는 경우, **4만 달러 초기자본 제공, 입주공간** 및 진출 기업에게 **1년 체류비자 발급**

* '11년 시범사업 진행, '14년까지 1,000개 기업지원 목표

* 24주 동안 네트워킹, 멘토링, 투자유치, 잠재고객 및 파트너 발굴 등

○ **(사업성과)** 전 세계 50개국에서 1,500개의 기업이 신청접수

* '11년 200개 기업 선정, 선정기업들에 총 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